

「평생교육원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8. 11. 19. 개정 판 (시행 2018. 10. 1.) → 2020. 12. 21. 개정 판 (시행 2020. 12. 2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27/compare?from=882&to=1054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2:57:2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운영위원회 구성) 1.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(위원장), 평생교육원장(서기)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재무실장, 내부감사,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12-10> 2.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,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. <개정 2016-12-10> 3.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	제23조(운영위원회 구성) 1.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 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총장(위원장), 평생교육원장(서기)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재무처장, 내부감사, 평생교육원 팀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12-10> 2. <삭제 2020-12-21><개정 2016-12-10> 3.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제26조(심의 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6-02-29> 1. 평생교육원 주임교수, 계약지원 임면에 관한 사항 2.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.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.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.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16-12-10> 6. 기타 원장 승인 사항.	제26조(심의 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6-02-29> 1. 평생교육원 주임교수, 계약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2. 입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. 학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. 체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.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16-12-10> 6. 기타 원장 승인 사항.
제28조(예산편성) 원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28조(예산편성) 원장은 매년 예산보고 기간에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0-12-21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평생교육원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"재무실장"을 "재무처장"으로 하고, "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, 서기는 평생교육원팀장이 된다. <개정"을 "<삭제 2020-12-21><개정"으로 한다.

제26조 중 "계약지원"을 "계약직원"으로 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예산편성) 원장은 매년 예산보고 기간에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